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와 지방재정운용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다 의미있고 충실하게 구성하여 현실적으로 중앙 및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형식적으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운용 방향 및 지방재정정책 준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재정을 고려한 지방재정운용의 활용 자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이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집계한 단순·나열식 통계 위주의 산출물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기적인 재정운용의 분석이 미흡하고 그리고 계획상 나타나는 수치가 불명확하고 실제 예산 및 재정운영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재정 추이 등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틀로서 활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비전 등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대폭

적인 내용의 개편 및 충실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연계 강화, 국가 및 지방재정 여건·전망 분석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향 제시와 발전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내용개편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장래 지방재정의 실정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방재정 지원 및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은 이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구체적 전략을 구상하는 식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 및 정책연계 측면에서는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의의 및 운용사례는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II. 우리나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과 개선과제

1. 의의 및 내용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1988년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Rolling Plan)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중기계획 수립내용으로는 첫째, 재정목표로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재정전망으로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등을 판단하고 있다. 셋째, 투자계획으로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의 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고 행자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이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 기본적으로 투·

용자사업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채 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개선과제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어느 정도는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예산편성과 같은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큰 틀에서 규정짓는 강력한 구속력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식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초래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수립내용에 있어서도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를 단순 취합하여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제고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담보하는데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특히 수립 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형식적인 수립을 억제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계획성을 담보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성 제고를 통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하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내용을 개편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와 지방재정운용

1.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및 역할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는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보다는 지방재정운용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 예산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48년도에 도입된 지방재정계획 작성 법적근거는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의하면, 내각은 매 년도에 익년도 지방재정 세입세출 예상액에 관

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함과 아울러 일반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7조 1항에 지방의 세입총액의 예상액 및 다음에 열거하는 내역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즉, ① 각 세목별 과세표준액, ② 세율 등 징수예상액, ③ 사용료 및 수수료, ④ 기채액, ⑤ 국고보조금, ⑥ 잡수입 등이다. 그리고 제7조 2항에 지방의 세출 총액의 예상액 및 다음에 열거하는 내역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즉, ① 세출 종류별 총액 및 전년도대비 증감액, ② 국고보조금에 기초한 경비의 총액, ③ 지방채의 이자 및 원금상환금 등이다.

한편,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보장 기능을 들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원보장은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전체의 세입과 세출을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수지를 명확히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만약 지방재정계획상의 수지에 자원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행정 및 재정에 관한 제도의 개정 혹은 지방교부세율의 변경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있어 한마디로 지방재정계획은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침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계획은 매년도 추진되어야 할 지방행정의 수준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 행정 및 재정제도의 개정에 수반하여 경비의 증감 등을 표준적인 기준에 의해 세출에 계상하고 한편으로는 경제의 동향, 세제 및 재정제도의 개정 등을 고려한 당해 년도의 수입예상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그 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지방행정의 수준, 제도개정 등에 수반하여 경비의 증감경향, 지방세 및 기타 세입의 동향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도 적절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고 개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 있는 지표를 표준적인 지침으로 삼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재정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시책과의 조화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경제정책은 공공사업의 중요한 실시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 양자가 협력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재정계획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국가의 각종 시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이들 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2. 지방재정계획의 구성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년도 실제 수지를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추측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비와 수입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여 수지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의 세출에는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비, 예를 들어 국가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초과하는 급여비, 국고보조금의 초과부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비 등은 계상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세입에 있어서도 초과과세에 의한 세수입, 기부금, 수탁사업에 의한 수입 등 임시적인 세입은 계상되지 않는다.

지방재정계획은 도도부현, 시정촌을 통한 순계의 형태로 세입세출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도도부현지출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간 자금의 이동은 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속한 세입세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사업이나 공기업 등의 공영사업회계에 속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재정계획 책정방침

이상의 지방재정계획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듯이 일본의 지방재정계획 책정에 있어서도 그 책정 지침을 내각에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는 지방재정의 현상을 고려하여 세출 측면에서 기본방침 및 행정개혁의 중요방침(2005년 12월 24일 내각결정)에 따라 세출전반에 걸쳐 재검토함으로써 세출 총액의 계획적인 억제를 기하는 한편 당면의 중요과제인 인간력의 향상과 발휘(교육, 문화, 과학기술, IT), 개성과 창의에 의한 매력있는 도시와 지방의 형성, 공평하고 안심적인 고령화 사회 및 소자화 대책, 친환경사회의 구축 및 지구환경문제 대응 등에 재원의 중점적인 배분을 기한다. 아울러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부담의 공평화 및 적정화의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의 일반재원의 확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폭적인 자원부족에 대해 지방재정의 운영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전조치를 강구하여 다음의 방침에 따라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실현하고 바람직한 세제의 구축을 위하여 3조엔 규모의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의 세원이양, 정률감세의 폐지, 2006년도의 고정자산세의 평가 재산정에 수반하여 토지에 관계되는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의 조정조치를 취하고 지방담배세의 세율의 인상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중 세원이양에 대해서는 응익성 및 편재도의 축소 관점을 중시하여 개인주민세 세율을 10% 비례세율(도부현민세 4%, 시정촌민세 6%)로 함과 아울러 2007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재원부족 예상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지속적인 감세에 따른 영향액 이외의 지방재원부족(이하 통상수지에 관계되는 재원부족이라 함) 예상액 5조 7,044억엔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2004년도에 강구한 2006년도까지의 제도개정에 기초하여 재원부족액 중 건설지방채(재원대책채)의 증발 등을 제외한 잔여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절반씩 보전한다. 국가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 가감에 의하고 지방부담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특례가 되는 지방채(임시재정대책채)에 의해 보전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1993년도의 투자적경비에 관계되는 국고보조부담율의 수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지방교부세특별회계로 대체하고 있었던 금액 2,495억엔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도 이후 지방교부세의 총액에 가산한다.

한편, 이에 기초하여 2006년도의 통상수지에 관계되는 재원부족액예상액 5조 7,044억엔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해 전액을 보전한다. 첫째,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반회계가산에 의해 1조 1,472억엔 증액. 둘째, 지방재정법 제5조의 특례가 되는 지방채를 2조 9,072억엔 증발. 셋째, 건설지방채를 1조 6,500억엔 증발. 넷째, 2006년도 세제개정에 의해 소득세로부터 개인주민세로의 세원이양이 실시됨에 따라 소득세에 관계되는 지방교부세율분의 감소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2007년도는 2,600억엔, 2008년도는 2,000억엔, 2009년도는 1,400억엔을 교부세 총액에 가산한다.

③ 삼위일체개혁의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개혁을 고려하여 2006년도에는 3조 94억엔을 소득양여세로서 세원이양하고 세원이양예정특례교부금을 폐지한다. 이 2006년도 소득양여세에 대해서는 세원이양후의 도부현민세소득할, 시정촌민세소득할의 세율을 고려하여 도도부현에 2조 1,794억엔, 시정촌(특별구를 포함)에 8,300억엔을 각각 양여한다.

④ 2006년도부터 아동수당의 제도 확충이 실시되므로 이에 수반하여 지방부담의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하여 당분간의 조치로서 지방특례교부금(아동수당특례교부금)을 신설하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각각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교부한다.

⑤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원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과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중점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의 중점화와 지방채자금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여 필요한 지방채자금을 확보한다. 그 결과 지방채계획의 규모는 13조 9,466억엔(일반회계분 10조 8,174억엔, 공기업 특별회계분 3조 1,292억엔)으로 한다. 또한 2006년 4월부터 개시되는 지방채협의제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⑥ 사회경제정세의 추이에 대응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의 적정화를 기한다.

⑦ 지역경제진흥 및 고용안정을 기하면서 개성과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구축, 주민에 밀착한 사회자본의 정비, 재해에 강한 안전한 지역가꾸기, 종합적인 지역복지시책의 충실, 농산어촌지역의 활성화 등을 기하기 위하여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비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고금리 공적자금에 관계되는 지방채에 대한 특별교부세조치 및 일정의 공영기업금융공고자금에 관계되는 공기업채에 대한 차환조치를 강구한다.

⑨ 지방공기업의 경영기반의 강화, 상하수도, 교통, 병원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정비 추진,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비부담구분에 기초하여 일반회계로부터 공기업회계에 대해 필요한 대체조치를 강구한다.

⑩ 지방행정 및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직원수의 감축 및 급여구조의 개선을 추진함과 아울러 사무사업의 재검토, 민간위탁의 추진 등 행정 및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한다.

4. 지방재정계획의 구체적 내용

1) 지방재정계획의 중요 포인트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계획 책정 방침에 따라 2006년도 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출을 엄격하게 억제(일반세출 ▲2.0%)하여 2005년 대비 △1.7%

○ 지방재정계획의 규모 : 83.2조엔 (전년대비 △0.7%, 5년연속감)

- 지방일반세출 : 65조엔 (전년대비 $\Delta 2.0\%$, 7년연속감)
 - 아동수당확충분등 제외
- ② 지방일반재원의 총액을 전년도 대비 상회하여 확보
 - 지방일반재원 : 55.6조엔 (전년대비 +204억엔)
 - 지방세 : 34.9조엔 (전년대비 +1조 5,794억엔)
 - 지방교부세 : 15.9조엔 (전년대비 $\Delta 9,906$ 억엔)
 - 임시재정대책채 : 2.9조엔 (전년대비 $\Delta 3,159$ 억엔)
 - 기타 : 1.9조엔 (전년도비 $\Delta 2,525$ 억엔)
- ③ 결산과리에 대한 대폭적인 시정
 - 투자적 경비(단독) : $\Delta 2.0$ 조엔
 - 정상적 경비(단독) : 1.0조엔
 - 결과적으로 일반재원 기준으로 1.0조엔 시정
- ④ 재무체질의 개선
 - 지방재원부족의 축소 : 2005년 11.2조엔 \rightarrow 2006년 8.7조엔
 - 이중 통상수지 : 2005년 4.3조엔 \rightarrow 2006년 1.4조엔
 - 일반재원비율의 상승 : 2005년 64.0% \rightarrow 2006년 66.6%
 - 지방채 의존도의 저하 : 2005년 14.6% \rightarrow 2006년 13.0% (발행액 $\Delta 1.4$ 조엔)

● <표1> 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 내역 ●

구 분	2006년도 (A)	2005년도 (B)	증감액 (A)-(B)=(C)	증감률 (C)/(B)
(세 입)				
지 방 세	348,983	333,189	15,794	4.7
지 방 양 여 세	37,324	18,419	18,905	102.6
지 방 특 레 교 부 금	8,160	15,180	▲7,020	▲46.2
지 방 교 부 세	159,073	168,979	▲9,906	▲5.9
국 고 지 출 금	102,015	111,967	▲9,952	▲8.9
지 방 채	108,174	122,619	▲14,445	▲11.8
사 용 료 및 수 수 료	16,450	16,438	12	0.1
잡 수 입	51,329	50,896	433	0.9
계	831,508	837,687	▲6,179	▲0.7

(세출)				
급 여 관 계 경 비	225,769	227,240	▲1,471	▲0.6
- 퇴직수당외	205,321	209,749	▲4,428	▲2.1
- 퇴직수당	20,448	17,491	-2,957	16.9
일 반 행 정 경 비	251,857	232,857	19,000	8.2
- 보조	107,286	99,428	7,858	7.9
- 단독	134,785	125,063	9,722	7.8
- 국민건강보험관계사업비	9,786	-8,366	1,420	17.0
공 채 비	132,979	133,803	▲824	▲0.6
유 지 보 수 비	9,768	9,817	▲49	▲0.5
투 자 적 경 비	168,889	195,211	▲26,322	▲13.5
- 직할·및 보조	67,978	70,300	▲2,322	▲3.3
- 단독	100,911	124,911	▲24,000	▲19.2
공 영 기 업 전 출 금	27,346	28,659	▲1,313	▲4.6
- 기업채상환비보통회계부담분	18,828	20,568	▲1,740	▲8.5
- 기타	8,518	8,091	-427	5.3
불교부단체 수준초과경비	14,900	10,100	4,800	47.5
계	831,508	837,687	▲6,179	▲0.7
지방일반세출	664,801	673,216	▲8,415	▲1.2
(아동수당확충분등제외)	(656,256)	(669,684)	(▲13,428)	(▲2.0)

2) 2006년도 지방재정계획의 구체적 내용

① 2006년도 지방재정의 모습

- 지방재정계획의 규모 : 83조 1,508억엔 (전년대비 ▲6,179억엔, △ 0.7%)
 - 아동수당확충분등제외 : 82조 2,963억엔 (전년대비 ▲1조 1,192억엔, △1.3%)
- 지방일반세출 : 66조 4,801억엔 (전년대비 ▲8,415억엔, △1.2%)
 - 아동수당확충분등제외 : 55조 6,334억엔 (전년대비 1조 3,428억엔, △2.0%)
 - 일반재원총액 : 55조 6,334억엔 (전년대비 204억엔, 0.0%증)
 - 일반재원비율 : 66.6%(2005년 64.0%)

② 재원부족의 보전

- 2006년도의 재원부족(8조 7,420억엔)

- 통상수지의 부족 : 5조 7,044억엔
 - 항구적인 감세의 실시에 따른 감수액 : 3조 376억엔
 - 2005년도 당초 : 통상수지 7.5조엔, 항구적인 감세분 3.5조엔, 선행감세분 0.2조엔, 합계 11.2조엔
 - 2004년도 당초 : 통상수지 10.2조엔, 항구적인 감세분 3.3조엔, 선행감세분 0.6조엔, 합계 14.1조엔
 - 2003년도 당초 : 통상수지 13.4조엔, 항구적인 감세분 3.2조엔, 선행감세분 0.7조엔, 합계 17.4조엔
 - 통상수지의 부족에 대한 보전(5조 7,044억엔)
 - 지방교부세의 증액에 의한 보전조치 : 1조 1,472억엔
 - 임시재정대책채의 발행 : 2조 9,072억엔
 - 재원대책채의 발행 : 1조 6,500억엔
 - 항구적인 감세에 따른 감수에 대한 보전(3조 376억엔)
 - 항구적인 감세에 의한 지방세의 감수 : 1조 8,080억엔
 - 국가의 담배세의 일부 이양, 법인세의 교부세율 인상, 지방특례교부금 및 감세보전채에 의한 보전
 - 국세의 감세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영향 : 1조 2,296억엔
 - 교부세특별회계차입금에 의해 보전하고 국가와 지방이 절반씩 상환
- ③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일반재원 총액의 확보
- 일반재원 : 55조 5,334억엔(전년대비 +204억엔 0.0%증)
 - 지방세 : 34조 8,983억엔(2005년 33조 3,189억엔)
 - 지방교부세 : 15조 9,073억엔(2005년 16조 8,979억엔)
 - 임시재정대책채 : 2조 9,072억엔(2005년 3조 2,231억엔)
 - 기타 : 1조 9,206억엔(2005년 2조 1,731억엔)
 - 합계 : 55조 6,334억엔(2005년 55조 6,130억엔)
 - 지방교부세 : 15조 9,073억엔(전년대비 △9,906억엔 △5.9%)

④ 결산과리에 대한 시정

- 투자적경비(단독) : (-) 2.0조엔정도
- 경상적경비(단독) : (+) 1.0조엔정도
- 결과적으로 일반재원 기준으로 1.0조엔 시정

⑤ 지방재정의 건전화

- 지방재원부족의 압축(통상수지) : 2005년도 7조 5,129억엔 → 2006년도 5조 7,033억엔
- 이중 통상수지(절반대상) : 2005년도 4조 3,282억엔 → 2006년도 1조 4,058억엔
- 지방채의존도의 저하 : 2005년도 14.6% → 2006년도 13.0%
- 지방채 신규발행의 감소 : 2005년도 12조 2,619억엔 → 2006년도 10조 8,174억엔
 - 지방세출의 증가요인
 - 국고보조사업(일반행정경비·투자적경비) : 사회보장관계경비를 중심으로 +0.6조엔
 - 지방세출의 감소요인
 - 급여관계경비(퇴직수당제외) : 인원2.3만인 감축, 급여구조개혁등에 의해 △0.4조엔
 - 투자단독사업 : 1989년도 및 1990년도 수준으로 억제로 인해 △0.4조엔

⑥ 삼위일체개혁의 실현

- 2006년도까지 보조금개혁 4.7조엔, 세원이양 3조엔, 교부세총액 △5.1조엔의 개혁을 실현
- 국고보조부담금 개혁
 - 2006년도까지 4.7조엔의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
- 세원이양
 - 2006년도 세제개정으로 소득세로부터 주민세로의 3조엔 세원이양을 실현(2007년도부터)
- 교부세 개혁
 - 교부세(임시재원대책채를 포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1조엔 억제
- 세원이양에 따른 소득세의 교부세율분배로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서 교부세총액의 가산조치를 강구(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하의 금액을 가산)
 - 2007년도 : 2,600억엔

- 2008년도 : 2,000억엔
- 2009년도 : 1,400억엔

⑦ 지방재원의 확보

- 지방교부세 총액의 확보(15조 9,073엔) : 전년대비 $\Delta 9,906$ 억엔, $\Delta 5.9\%$
 - 지방교부세의 법정률분 : 12조 5,257억엔
 - 일반회계에 의한 가산조치 : 1조 2,158억엔
 - 교부세특별회계차입금 : 1조 1,610억엔
 - 교부세특별회계차입금상환 : $\Delta 799$ 억엔
 - 교부세특별회계차입금지불이자분 : $\Delta 6,773$ 억엔
 - 교부세특별회계잉여금의 활용등 : 4,702억엔
 - 2005년도 이월분 : 1조 2,908억엔
- 지방채총액 : 10조 8,174억엔(전년대비 $\Delta 1$ 조 4,445억엔, $\Delta 11.8\%$)
 - 통상채 : 5조 8,082억엔
 - 재원대책채 : 1조 6,500억엔
 - 감세보전채 : 4,520억엔
 - 임시재정대책채 : 2조 9,072억엔

⑧ 아동수당의 확충에 관계되는 지방특례교부금의 신설

- 아동수당제도의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의 증가(2006년도 1,491억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특례교부금의 신설

⑨ 퇴직수당채의 신설

- 장래의 총인건비의 삭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년퇴직등의 퇴직수당채의 발행을 확충($2,600$ 억엔)
 - 평년도 기준을 상회하는 퇴직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인건비적정화계획을 책정하고 총인건비의 삭감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허가에 의해 퇴직수당채의 발행을 확충

- 당해 자치단체의 퇴직수당액이 평년도 기준으로 표준퇴직수당액을 상회하는 액에 대해서 발행가능
- 10년간의 한시조치(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IV. 맺는말 : 특징 및 시사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규율하고 있는 등 강력한 법적 지위를 갖고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요인 및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어 다른 지방재정제도 보다 상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재정계획 책정 방침을 시달하여 국가 및 지방의 재정운용 상황, 지방세 및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및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재정계획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상황을 파악하여 부족재원의 보전방안 제시 등 각종 지방재정운영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로 운영됨으로서 국가재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지방재정계획제도를 통해서 지방의 익년도 세입세출을 전망하여 이를 기초로 국가가 지방재정의 재원부족 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하여 지방의 재원부족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국가가 익년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운영 틀을 제시하여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제도의 의의가 있으며 그리고 수립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상의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와 우리나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므로 제도의 단순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려해볼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을 종합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기능으로서 위상

재정립하여 매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되 범정부차원에서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여건, 세제 및 지방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자원변화 상황, 지방재정 부족상황 등에 대한 국가의 지방재정 대책, 인건비 등 세출억제 수준 등 기준과 근거 제시,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 자원 배분의 변화 등 종합적으로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틀을 제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구축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 및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 제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 강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전환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및 관련 지방재정제도와의 위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국가의 재정운영 논리에 구속되어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의 여지를 안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표2> 우리나라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와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와 비교 ●

구 분	우리나라(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일 본(지방재정계획제도)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88.4 제정)	◦ 지방교부세법 제7조(1948년 제정)
수립주체	◦ 쉰 지방자치단체	◦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결정 -각 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법 제7조 1항 및 2항에 열거된 내역을 제출
수립시기	◦ 상반기 지침시달, 하반기 자치단체에서 수립	◦ 내각이 수립지침을 시달하여 이에 기초하여 자치단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
수립절차	◦ 국가지침을 반영한 행자부 지침시달 → 자치단체 수립 → 지방의회 보고 → 행자부 종합계획 작성 → 국무회의 보고	◦ 내각이 수립지침을 시달하면 이에 기초하여 각 자치단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 내각이 정리하여 국회에 심의, 결과를 일반에게 공표
계획기간	◦ 5년(기준년도, 향후4년전망) * ' 05년도에 ' 05~ ' 09 수립	◦ 익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전년도 대비 증감비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목표, 세입·세출추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부분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목별 과세표준액, 세율등 징수에상액 - 사용료 및 수수료 - 기채액 - 국고보조금 - 잡수입 ◦ 세입부분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종류별 총액 및 전년도대비 증감액 - 국고보조금에 기초한 경비총액 - 지방채의 이자 및 원금상환금
자원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치 추계하여 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익년도 세입세출에 대해 당해 년도와 비교 전망
계획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Rolling Plan)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대비 익년도 세입세출 전망하여 지방의 자원부족액을 파악하여 자원대책을 강구하는 자원보장 기능 성격 ◦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지침 성격 ◦ 국가시책과의 조화성을 확보하는 성격
계획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에서 수립후 자치단체에서 구성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제출한 서류에 기초하여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심의
관계부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별 계획 수립후 행자부에서 종합하여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법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심의
법적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만 의무사항이며 반드시 준수할 강제력 없음 ◦ 지침상에 투융자, 지방채발행의 사전기준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자치단체는 관련 서류제출의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다른 지방재정관련 제도와의 연계의무는 없음
외부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내각이 매년 공표 의무